

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- 회부일자 : 2010년 4월 7일

3. 제안이유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개정되어 우리도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제명을 “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
- “도로명주소법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1조)
-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이관하여 삭제(안 제3조)
- 2개 이상의 시·군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이관하여 삭제(안 제4조)
-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‘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’으로 변경(안 제5조)
-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
- 충청북도 ‘새주소위원회’를 ‘도로명주소위원회’로 명칭변경 하고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9조 제1항)
-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로명주소법으로 이관하여 삭제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- 「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이 2009년 4월 1일 「도로명주소법」으로 제명 등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
- 개정된 도로명 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으로 이관되어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제명변경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
-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부산, 인천, 대전, 충남, 경남, 제주도 등 6개시도 개정완료